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6
----------	----------

제출연월일: 2020년 11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0.7.2.)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우리구 중·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

-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서울시 지역으로 할 수 있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함

나.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안 제4조)

-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가맹점의 등록(안 제5조)

-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대해 규정함

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안 제6조)

-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마. 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안 제7조)

-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시 잔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음

바. 사업 및 지원(안 제8조)

-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음

사. 강서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안 제9조)

-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및 축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10.8.~10.2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강서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강서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강서사랑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유효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강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에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8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강서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강서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서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강서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발행액 : 연30,000백만원 발행
  - 총발행금액의 할인보전금 7%(시5%, 구2%)
  - 운영대행비용은 발행액의 1.65%
- 물가상승률 미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할인보전금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운영대행비용	495	495	495	495	495	2,475
	소계(b)	2,595	2,595	2,595	2,595	2,595	12,975
□ 총 비용(b-a)		2,595	2,595	2,595	2,595	2,595	12,975

###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비		-	-	-	-	-	-
시비		1,995	1,995	1,995	1,995	1,995	9,975
구비	지방세수입	600	600	600	600	600	3,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595	2,595	2,595	2,595	2,595	12,975

### 5. 작성자: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과장 김 강 수

(담당: 행정7급 김주연 / ☎ 2600-6613)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제안이유

- 우리 구 중·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증진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
-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안 제4조)
- 사업 및 지원(안 제8조)
-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안 제9조)

##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4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지역경제과	통보(조치)일		2020. 10. 2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45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김주연	전화번호 02-2600-66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중·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지역경제과장 귀하

## [관 계 법 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